



보도시점 2025. 3. 31.(월) 18:00 배포 2025. 3. 31.(월) 15:00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후속조치 마련

- 올해 7월부터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선도 RFI 제도 도입 -
-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31(월)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①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및 ②선도 RFI** 도입방안, ③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한국은행(국제국장), 민간회원사 44개 중 42개 기관 참석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각 과제들의 세부 내용과 기준, 실무 적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도입방안 >

올해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①현물환시장, ②외환스왑시장, ③전체(현물환 + 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09:00~15:30)·연장시간대 (15:30~⁺¹02:00) 거래 비중이 발표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非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리그테이블 예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	
	기관	참조	기관	참조	기관	참조
1위	A	주간 60%, 연장시간 40%	C	주간 80%, 연장시간 20%	A	주간 70%, 연장시간 30%
2위	B	주간 80%, 연장시간 20%	A	주간 80%, 연장시간 20%	B	주간 75%, 연장시간 25%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추가 인센티브 방안 지속 강구 예정

〈 선도 RFI 도입방안 〉

아울러,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하여,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준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하여, ①현물환 양방향거래, ②현물환 호가거래, ③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 항목별 거래실적 X 가중치(예: 현물환 양방향 30%, 현물환 호가거래 50%, 외환스왑 20%)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①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②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③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④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의 특례를 부여한다.

〈 RFI의 경상거래 등(증권투자 외 자금) 환전 가이드라인 〉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되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2.10일 개정)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되어 국경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 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장 정여진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장 황희정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안건희 (gunny14@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책임자	과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서기관 김민주 (kimminju@korea.kr)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책임자	팀장 백봉현 (02-759-5967)
		담당자	차장 정휘채 (hcjung@bok.or.kr) 과장 김성기 (sk.kim@bok.or.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 **(대상)** RFI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은행간시장 참가자 중 항목별 거래 비중 상위 7개 기관(거래량 순위만 발표, 거래금액은 비공개)
 - ※ 리그테이블 포함 기관의 수는 제도운영을 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 非은행 부문 1위도 별도 발표
- **(항목)**
 - ① 현물환시장의 전체 거래량 대비 기관별 거래량
 - ② FX스왑시장의 전체 거래량 대비 기관별 거래량
 - ③ 현물환 + FX스왑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기관별 거래량
- ※ 기관별 주간(09:00~15:30)과 연장시간대(15:30~⁺¹02:00) 거래 비중 병기
- **(기준)** 전체 거래량 대비 기관별 거래량(매도·매수)의 점유율
 - ※ 직거래는 제외하고 중개회사를 경유한 거래실적만 인정

< 항목별 산정방식 및 발표 예시 >

- **연간 거래량:** 전체 현물환 2조 6,400억불, FX스왑 3조 8,600억불
A은행(매도+매수) 현물환 3,000억불, FX스왑 4,000억불
- **산정방식:**
 - ① 현물환: $3,000 / 2\text{조 } 6,400\text{억불} \times 2 = 5.7\%$
 - ② FX스왑: $4,000 / 3\text{조 } 8,600\text{억불} \times 2 = 5.2\%$
 - ③ 전체: $7,000 / 6\text{조 } 5,000\text{억불} \times 2 = 5.4\%$
- **발표내용:**
 - ① 현물환: 5위(주간 75%, 연장시간 25%)
 - ② FX스왑: 6위(주간 80%, 연장시간 20%)
 - ③ 전체: 5위(주간 78%, 연장시간 22%)

- **(주기)** 금년 7월부터 1년 주기로 발표
 - ※ 추후 제도 정착시 발표주기 단축(반기 또는 분기) 검토
- **(발표)** 외시협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인센티브) 전체 거래량 상위 3개 및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 기재부·한은·금감원의 기관·개인표창 수여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 지속 강구

2 | 선도 RFI 제도

- (대상) 직전 1년간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FX스왑 거래에 참여한 RFI 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 선정
- (기준)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
 ※ 현재 원/달러 선도은행 거래실적 산정방식에서 시간대별 가중치만 제외
 ○ 단, 외환당국의 지침, 규정, 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도 반영*
- * 선도 RFI 자격요건에 포함하거나 거래실적 산정시 평가점수에 반영

< 거래실적 산정방식(안) >

$$\text{은행별 총점}_i = \sum (\text{항목별 거래실적}^j \times \text{가중치}^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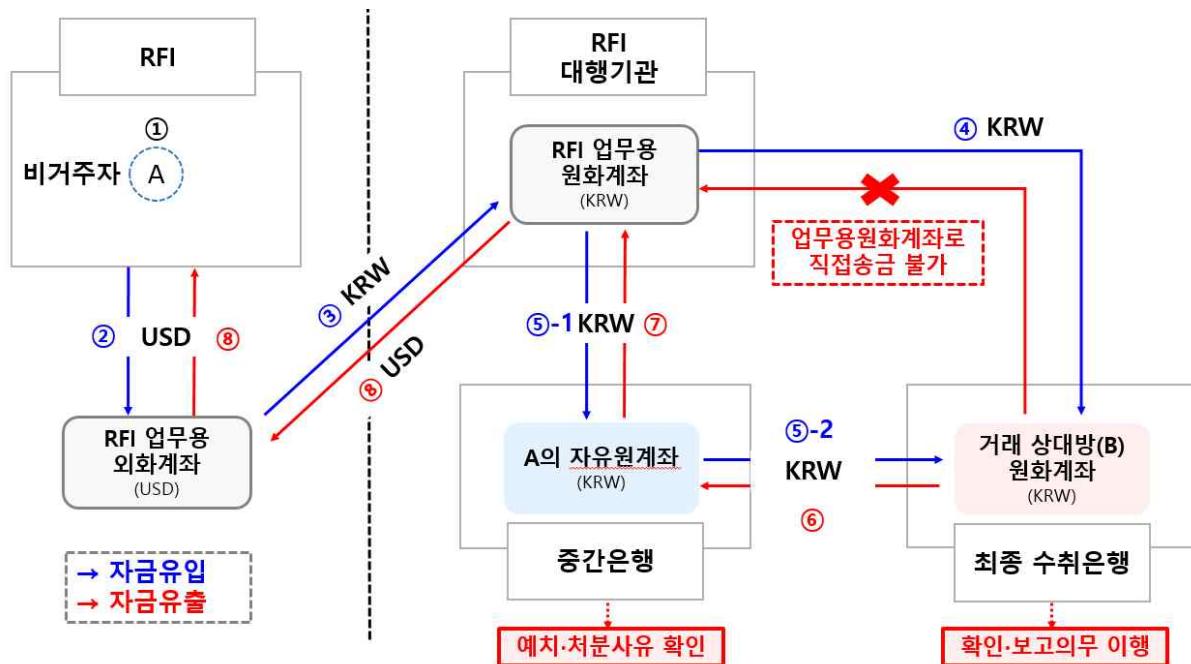
항 목	가중치*	산 식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30%	$\frac{(\text{Min}[\text{매수액}_i, \text{매도액}_i] - \text{조정값}_i) \times 2}{\text{매수액}_i + \text{매도액}_i}$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50%	$\frac{(\text{호가매수액}_i + \text{호가매도액}_i) - \text{조정값}_i \times 2}{(\text{총호가매수액} + \text{총호가매도액})}$
외환스왑 거래실적	20%	$\frac{(\text{매수액}_i \times \text{만기 가중치}) + (\text{매도액}_i \times \text{만기 가중치})}{\text{총 매수액} + \text{총 매도액}} \times \frac{\text{만기 가중치}}{\text{일수} \times 365/91}$

* 도입 초기임을 감안, 거래실적 산식은 현행 원/달러 선도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항목간 가중치는 현물환 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위 비율은 잠정)

- (인센티브) ① 외시협 및 운영위 참여,
 ②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③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
 (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
 ④ 기재부의 기관·개인표창
- (선정시기) 금년 7월부터 1년 주기로 선정

참고 2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확인의무			
	RFI	대행기관	중간은행	최종 수취은행
①·② 비거주자 A와 RFI간 FX 계약 체결, RFI 업무용 외화계좌로 외화 송금	거주성 (비거주자)	-	-	-
③ RFI가 은행간시장에서 조달한 원화를 업무용 원화계좌에 예치 (※모든 기관과 직거래 可)	-	-	-	-
④ 대행기관은 전달받은 지급지시에 따라 최종 수취은행으로 원화 이체	-	-	-	확인의무, 증빙서류
④ 최종 수취은행은 거래 당사자(A, B)의 신고 의무·증빙서류 확인 후 B 계좌로 원화 예치 • RFI가 대행기관 및 최종 수취은행에 지급지시				
⑤-1 대행기관은 지급지시에 따라 중간은행에 개설된 A의 자유원계좌로 원화 이체 • RFI가 대행기관 및 중간은행에 지급지시	명의 동일성		자유원계좌 예치사유 (RFI로부터 입금)	-
⑤-2 추후 중간은행은 지급지시에 따라 최종 수취은행으로 원화 이체 • 고객이 중간은행에 지급지시	-	-	자유원계좌 처분사유	-
⑥ 인정된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A의 자유원계좌로 이체	-	-	자유원계좌 예치사유	-
⑦ 중간은행은 A의 요청에 따라 자유원계좌에 예치된 원화를 RFI 업무용 원화계좌로 이체	거주성 (비거주자)	-	자유원계좌 처분사유 (RFI로 송금)	-
⑧ RFI가 은행간시장에서 조달한 외화를 업무용 외화계좌에 예치한 후 A에 송금 (※모든 기관과 직거래 可)	명의 동일성		-	-

1. RFI 체크리스트

- RFI는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환거래를 요청한 고객의 비거주성 여부, 고객명의-계좌정보간 명의 동일성 확인

- ① 고객이 「외국환거래법」上 비거주자인지 LEI 등을 통해 확인
- ② 고객이 환전요청한 원화를 본인의 비거주자자유원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RFI(또는 대행기관)는 고객과 해당 비거주자 자유원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명의 확인은 최초 1회로 충분하며, 계좌정보 변경이 없다면 추가확인 불요
** 同 확인의무는 RFI-대행기관간 계약에 따라 절차·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다만, 고객이 환전요청한 원화를 RFI 업무용 원화계좌에서 최종수취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명의 확인의무 면제

참고 : 명의 동일성 확인 방법(예시)

- RFI가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명의 자유원계정의 사본으로 확인
- RFI는 국내은행에 고객의 비거주자자유원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문의·확인
 - 고객 계좌가 개설된 국내은행이 RFI(대행기관)에 계좌개설 여부, 계좌타입을 확인해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가능
- RFI는 고객의 SSI(Standard Settlement Instruction)상의 계좌에 대해 결제실패 부담이 없는 소액을 이체(테스트 거래) 하여 확인

- RFI는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라 SWIFT 메시지를 대행기관 및 중간은행·최종 수취은행에 전달
- RFI는 SWIFT 메시지內 information 또는 BIS Code에 RFI로부터 이체된 자금("RFI")이라는 내용 표시
- 한편, RFI는 외국환중개회사 통하지 않고 직거래 가능

2. 대행기관 체크리스트

- ① (거래 상대방에 바로 지급) 지급지시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최종 수취은행으로 원화 이체 (→ 4. 참고)
-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좌 예치) 지급지시에 따라 비거주자자유원계좌가 개설된 중간은행으로 원화 이체 (→ 3. 참고)

3. 중간은행 체크리스트

- 추후 고객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은행은 고객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를 최종 수취은행에 전달
- 중간은행은 지급요청이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인정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중간은행은 원인거래가 신고를 요하는 거래인 경우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신고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필요

4. 최종 수취은행 체크리스트

- RFI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의무 및 증빙서류 확인 → 이상 없을시 거래 상대방 원화계좌에 입금
- 한편, 최종 수취은행은 거주자-비거주자간 거래대금(원화)을 거주자 원화계좌에서 RFI 업무용 원화계좌로 바로 송금 불가
 - * 단, 비거주자자유원계좌를 거쳐 RFI 업무용 원화계좌로는 송금 가능